

6월은 호국보훈의 날 입니다.



국 토 교 통 부

함께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2021.5.31.)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불임 서식에 따라 2021.6.11.(금)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국토교통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기획담당관, 재정담당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임대차지원팀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도심주택총괄과장, 교통정책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자동차정책과장, 항공정책과장, 항공안전정책과장, 공항공정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공택지기획과장, 건축혁신기획팀장, 도시재생정책과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 기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해양수산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병무청장, 농축진흥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통계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문화재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질병관리청장, 특허청장, 국가테러대책위원회장,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부동산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대구도시공사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한국부동산보안서비스협회장

주무관

이전욱

행정사무관

신익승

주택기금과장

전결 2021.6.4.

배성호

협조자

시행 주택기금과-5830

(2021. 6. 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43

팩스번호 044-201-5530

/ bejw@molit.go.kr

/ 비공개(5)

청렴한 공직사회, 행복한 국민생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79
----------	-------

발의연월일 : 2021. 5. 31.

발 의 자 : 이종배 · 태영호 · 조수진
김성원 · 김선교 · 김예지
박덕흠 · 박대수 · 金炳旭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으로 이동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과 정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2010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려는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무원 투기 또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이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신청사를 지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한때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수년 내에 다른 곳으로 재이전한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의 직원들이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청사가 이전한 뒤에도 미처분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을 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공급된 주택의 현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이전기관 종사자등에 대한 주택공급등) ① 사업주체는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주택을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기관 종사자등이 속한 기관의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이전기관 종사자등의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전기관 종사자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절차, 매입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적격성 여부 등 공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명단 및 주택공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

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4조의3(이전기관 종사자등에 대한 주택공급등) ① 사업주체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주택을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기관 종사자등이 속한 기관의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이전기관 종사자등의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u>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전기관 종사자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절차, 매입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적격성 여부 등 공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등의 명단 및 주택공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